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0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19년도 제정 이후 급변한 감염병 등 안전 관련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8.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4조(국제협력) ① (생략)</p> <p>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생략)</p>	<p>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u></p> <p>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국제협력)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p>